

제증명수수료규정

제1조 (제수수료) 본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조 (수수료의 구분) ① 전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(증명별)	(국문)	(영문)
성적증명서	500원	1,000원
졸업증명서	500원	1,000원
수료증명서	500원	1,000원
재학증명서	400원	800원
재적증명서	400원	800원
졸업예정증명서	500원	1,000원
기타증명서	500원	1,000원

② 단, 사진으로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실비를 추가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'98 제8차 교무위원회>